

【 16 】 제17대 국회 자진해산 요구 결의안

발의연월일 : 2005. 12. 15

발 의 자 : 이상원 의원 외 2인

□ 주 문

- 제17대 국회는 2006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여·야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그리고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국회의 조속한 자진해산 요구를 강력히 결의하고자 함.

□ 제안이유

- 1991년 부활된 지방자치 제도는 국가에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로 국민에게 제시한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의 특색있는 발전을 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서 지금까지 국민은 정부를 믿고 희망을 가지고 지방자치에 적극 참여하여 정착해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자치행정을 펼쳐나가고 있고 또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상황임.
- 지난 2005. 6. 30. 국회를 통과하여 2005. 8. 4. 공포 ·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은,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지방선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사들이 참석해야 하는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고 그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밀실에서 여당과 야당의 야합에 의해서 밀어붙인 것이 분명하므로 절차상 중요한 하자가 있음은 물론, 현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화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음.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헌법상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사유와 기초 지방의원까지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저의(底意) 이외에도 선진국과 달리 국가공무원은 물론 지방공무원의 정당가입을 불허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과, 이들의 인사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및 이들을 견제·감시해야 하는 시·군·구의회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한 개정 공직선거법은 동일한 헌법 아래서 서로 배치되는 입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 또한, 국회의원 및 광역 지방의원은 소선거구제인데도 기초 지방의원만 중선거구제인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헌법소원 사유 이외에도 특히, 시·군에 있어서 인구수가 적은 읍·면·동 주민에게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개정 공직선거법은 읍·면·동 경계가 형성된 대한민국의 역사적 유래를 도와시한 입법인 것이 분명함.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지방의회 의원 정수 감축과 더불어 지방의원을 유급제로 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것이 아니며 유급제를 빌미로 의원정수를 줄여서 읍면동 지역 대표성을 상실한 지방의회 제도는 진정한 지방자치에 위배되며 유급제를 폐지해서라도 읍면동 지역 대표성을 지닌 올바른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소선거구제로 해야 함.
- 이상과 같은 제안이유를 살펴볼 때, 2006년 지방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정당공천과 중선거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재개정은 공명정당한 것이며 이를 위해 이재오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재개정안을 고의로 심의하지 않고 계류시키며 국회 본연의 기능을 포기한 제17대 국회는 조속히 자진해산해야 한다.

□ 주요골자

- 제17대 국회 자진해산 요구 결의

붙 임 : 국회 자진해산 요구 결의문 1부